

▣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2-3호

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단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
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
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
공고합니다.

- 일 시 : 2022. 3. 22.(화) 11:00
- 장 소 : 단양군의회 본회의장(3층)

2022년 3월 15일

단양군의회 의장 장 영

